기요

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 자하는 경우에 시.도자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
ि ०।छम्रास

| 신청방법 | 우편, 방문 | | |
|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접수·처리 | 총 5일 | 시 · 도 접수 | 시·도 처리 (5일) |
| 수수료 | 5,000원 | | |
| 구비서류 | ▶ 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 1.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서 (1부) 2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(1부) 3 임원의 성명·주소·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·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4 기업진단보고서 및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제 16조제 1호의 2에 따른 확인서 각 (1부) 5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해당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(1부) 6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(1부) 7.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| | |
| 관련 법·제도 | 정보통신공사업법 (제 17조제 1항제 2호)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(제 22조)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(제5조 [별지 19]) | | |